경기평택항만공사와 오사카항만국의

파트너십 항만 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서

경기평택항만공사와 오사카항만국(이하, 양 기관이라 한다.)은 호혜관계에 근거하여, 평택항과, 오사카항만국이 관리하는 항(이하, 양 항만이라 한다.)의 교류를 증진시키고, 더불어, 양 기관의 상호이해와 장기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해, 파트너십 항만 활동으로서 제휴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 제휴의 목적

본 협약서는 양 항만의 진흥 및 계속적인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,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근거하여, 상호협력을 진행시키고, 상호이익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.

제2조 제휴사항

본 협약서에 의한 제휴사항은 의무 및 제한,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하나,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.

1. 양 기관은 양 항만 간의 물적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, 양 항만의 이용 촉진에 공동으로 노력한다.

2. 환경, 상업 및 양 기관이 그때그때 수시로 합의하는 다른 분야를 포함하여,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계한 정보의 교환을 실시한다.

3. 양 기관은 양 항만의 발전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기업, 그 외 단체의 교류 촉진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노력하다.

4. 그 외 사항은, 사회상황의 변화와 실제 필요성에 맞춰, 양 기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.

제3조 연락창구의 설치

양 기관은 정해진 제휴사항을 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, 본 협약서의 체결후 신속하게 연락창구가 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, 담당자의 연락처를 서면으로 상대측에 통지한다.

또한 당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, 지체없이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.

제4조 기타사항

본 협약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, 별도협의를 거쳐,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.

본 협약서는,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, 언젠가 한쪽 당사자가 본 협약서에 의한 제휴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는, 서면으로 상대측에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, 본 협약서는 상대측이 그 통지를 수리한 다음 6개월 후에 실효한다.

본 협약서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여,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유하고, 어느 것이나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.

2023년 09월 08일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경기평택항만공사 |  | 오사카항만국 |
| 사장 김석구(金 奭 具) |  | 국장　마루야마　준야(丸山　順也) |